

# 보조조건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얻지 못했습니다.

## 그래서 주택도시개발 부에 도움을 요청했습 니다.



더 자세한 정  
보를 얻으시려  
면 여기를 스  
캔하십시오.



저는 보조조건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를 거절했을 때 주택도시개발부에 문의했고 공정 주택 거래 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집주인은 장애인을 위해 애완동물 출입 금지 건물에 보조조건이나 정서적 도움이 되는 동물을 허용하는 등 타당한 거처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. 주택 거래 시 차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경우 주택도시개발부 또는 여러분 지역의 공정주택거래센터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십시오.

**hud.gov/fairhousing** 에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개발부 핫라인  
**1-800-669-9777** (영어/스페인어) **1-800-927-9275** (TTY)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**공정 주택 거래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. 이 권리를 사용하십시오!**



미주택도시개발부와 전국공정주택거래연합이 함께 하는 공익 메시지입니다. 연방 공정주택거래법은 인종, 피부색, 종교, 국적, 성별, 가족 조건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[www.hud.gov/fairhousing](http://www.hud.gov/fairhousing) 을 참조하십시오.